

인천지방법원 2021. 3. 11 선고 2020가단26091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유병연,김정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승헌

피 고 1. B

2. C

변론 종결 2021. 2. 18

판결 선고 2021. 3. 11

주 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8/220지분에 관하여 D(E생)과 피고들 사이에 각 체결된 2016. 10. 28.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들은 D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8/220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04. 5. 26.경 소외 F 주식회사와 사이에 신용카드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대금을 미납하였고, F 주식회사는 2005. 12. 20. 소외 주식회사 G에게, 주식회사 G은 2011. 4. 26. 소외 H 유한회사에게, H 유한회사는 2019. 2. 22. 원고에게 위 카드 대금미수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D을 상대로 채권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서울북 부지방법원은 2020. 2. 10. "D은 원고에게 37,975,944원 및 그 중 9,666,000원에 대하여 2020.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과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D이 위 지급명령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2020. 3. 31.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I는 D의 모로서, 2016. 6. 27. 사망하였다.

I의 상속인들로는 배우자 JC3/11지분), 자녀로서 D(2/11 지분), 피고 BC2/11지분), K(2/11 지분), 피고 C(2/11지분)이 있었다.

피고들 및 J, D, K는 2016. 10. 28. I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9/10지분에 관하여 이를 피고들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6. 10.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9/20지분에 관하여 2016. 6. 2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상태였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8/110지분이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 채권의 존부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그 양수 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6. 9. 29. 2004다5822 판결 등 참 조),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은 원고가 양도받기 전이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D에 대한 위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된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사해의사

1) 사해행위 및 피고들의 악의 추정상속재산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 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 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 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 7. 26. 선고 2007 다 29119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D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 중 18/110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원고 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 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들은, D이 부친 J으로부터 사업자금으로 50,000,000원을 받는 등의 특별수 익이 있었고, 피고들은 망 I를 병간호 하는 등으로 하여 피고들에게 기여분이 있어 이 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 당하지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에 기여분 이나 특별수익 등을

반영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게 되고(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참조),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도 위와 같은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 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판결 참조).

그러나 D에게 특별수익이 있다거나 피고들에게 기여분이 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따라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상속지분에 해 당하는,그 각 18/220지분에 관하여,피고들과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피고들은 D에게 위 18/220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김태환

별지